

서울특별시 광화문공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93
------------	-----

2015. 12. 1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1. 제안경위

- 2015. 5. 19. 김인제 의원 발의(2015. 5. 26. 회부)

2. 제안이유

-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고 “적합하게”를 “맞게”로 하며 “기재”를 “적은”으로 하고 “부여할”을 “붙일”로 하며 “경과한”을 “지난”으로 하고 “취하여야”를 “밟아야”로 하며 “상응하는”을 “만큼의”으로 하고 “명시하여”를 “명확히 적어”로 함.(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정책적 쟁점사항은 없음.
- 다만, “명시하여 통지하여야”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제6판, 148p)에서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안 제7조제2항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9조, 안 제11조제1항, 안 제14조는 “조치를 취하다”를 “조치를 밟다”로 개정하고자 하나, “밟다”는 ‘절차를 밟다, 차례를 밟다, 순서를 밟다’ 등으로 사용되므로(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6판, 274p), 행위에 해당되는 “조치를 취하다”는 “조치를 하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안 제11조제2항에서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을 “배상 등의 만큼의”로 하고자 하나,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제6판, 29p)에서 “상당한”의 순화 용어로 “상응하는”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안 제11조제2항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2. (생략)</p> <p>3. "신청자"란 자신의 명의로 책임 하에 광장을 <u>사용하고자 하는</u>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u>사용하려는</u> ----- -----.</p>
<p>제3조(관리)</p> <p>① (생략)</p> <p>② 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설치된 동상 및 부속 조형물 등(이하 "조형물등"이라 한다)이 건립 목적에 <u>적합하게</u> 이용되고 그 원형이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제3조(관리)</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맞게</u> ----- -----.</p>
<p>제5조(사용허가 신청)</p> <p>① 신청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사용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서를 <u>사용하고자 하는</u>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전부터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조(사용허가 신청)</p> <p>① ----- ----- <u>적은</u> ----- ----- <u>사용하려는</u> ----- ----- -----.</p>
<p>제6조(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p> <p>① 시장은 제5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p>	<p>제6조(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p> <p>① ----- ----- -----</p>

제12조 (조형물등의 이용승인)

① 조형물등을 저작권법 범위의 저작물로써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형물등 이용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이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조형물등 이용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조형물등의 이용승인)

① -----
 ----- 이용하려는 -----

 -----.

② -----
 ----- 변경하려는 -----

 -----.

제14조 (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이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하여 「저작권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위반시 조치사항) -----

 -----.